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5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. 1. 13.
발 의 자 : 박문수 의원
찬 성 자 : 이백균 의원
강선경 의원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,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(안 제5조)
- 나.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(안 제6조)
- 다.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단서 및 별지)
- 라.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의2)
- 마.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 신설함(안 제10조제2항~제3항)

바. 자전거 보관소·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“구청장”을 추가함(안 제11조)

사.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 근거 마련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

2)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1조

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, 제6조의2, 제7조~9조, 제11조

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연 31,700천원(인건비 28,700천원, 제경비 3,000천원) 소요

다. 업무협의 : 교통행정과

라. 기타 :

○ 입법예고(2016. 1. . ~ 2016. 1. 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”강북구“라 한다)의 모든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”강북구“라 한다)”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“자전거주차장”을 “자전거 주차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”을 “5년마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6조제2항 중 “제5조 및 제6항”을 “제5조”로 한다.

제8조 조 제목 중 “자전거주차장”을 “자전거 주차장”으로 하고, 제1항, 제3항 중 각각 “자전거주차장”을 “자전거 주차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”강북구“라 한다)”를 “강북구”로 하고 “요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사용료 감면) 영 제6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: 50% 범위 내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: 30% 범위 내
3. 만65세 이상 노인: 20% 범위 내

제10조제2항 중 “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”를 “영 제11조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자전거주차장”을 자전거 주차장“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“자전거 이용수요가”를 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수요가”로 하며, “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”를 “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자전거보관소·수리센터·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2조 조 제목 중 “자전거주차장”을 “자전거 주차장”으로 하고 본문 중 “자전거주차장”을 “자전거 주차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자전거주차장”을 “자전거 주차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,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제10조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자전거 주차장 요금표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: : 원/구획)

| 구 분 | 1회주차시 (1시간당) | 1일 주차권 | 월 정기권 | 3월 정기권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주차요금 | 200원 | 1,000원 | 5,000원 | 15,000원 |

※ 위 요금표는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상한액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4조 (구민의 권리와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“강북구”라 한다)의 모든</u>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<u>자전거주차장</u>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<신설 2012.6.22></p> <p>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 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서울특별시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<u>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</u> 수립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) ① <u>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자전거 도로의 유형별, 하천, 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기준 세분화</u></p> | <p>제4조 (구민의 권리와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“강북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자전거 주차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마다</u> 수립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) ① 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|

2. 자전거도로의 포장, 차선,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

<삭 제>

3. 육교·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·관리기준

<삭 제>

4.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

<삭 제>

② 제5조 및 제6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찰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제5조-----

-.

제8조 (자전거주차장의 유지·관리)

제8조(자전거 주차장의 유지·관리)

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6.22>

① -----

-----자전
거 주차장-----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자전거 주차장-----

제9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

제9조(자전거 주차요금) ① ----

-----.

다만,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"강북구"라 한다)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, 요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<삭제>

<신 설>

제10조(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) ① (생략)

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

-----강북구

-----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.

② <삭제>

제9조의2(사용료 감면) 영 제6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: 50% 범위 내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: 30% 범위 내
3. 만65세 이상 노인: 20% 범위 내

제10조(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[관련 법령]

□ 지방자치법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「주차장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「주택법」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28.]

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의3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의2(공영자전거 운영사업)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
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
2.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4.4.28.]

제7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)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(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)의 100분의 5로 한다.

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.

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4.28.]

제8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)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.

1. 자동차 전용도로(고속국도를 포함한다)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
2.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
3.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
4.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

[전문개정 2014.4.28.]

제9조(자전거 주차장의 운영)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,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,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1.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·모양·수량 및 제조회사명

2.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·보관한 일시
 3.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
 4.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
 - 가.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,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
 - 나. 기중,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>
1. 매각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,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.
 2. 기중
 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
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4.28.]

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7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)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. [전문개정 2014.4.29.]